

☞ 신청방법 : 상단 **[세부사업]**란에서 해당 과제명을 클릭하여 신청

→ 신청완료 후 “마이페이지”에서 신청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

☞ 작성서식 등 : 상단 **[첨부파일]**란에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→ 내용작성 → 신청시 파일 업로드

2026년도 [동부거점]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 공고(3차)

□ 사업개요

- 지원내용 : 기업의 수요에 따라 창안개발, 제품생산, 판로개척 등 지원분야별 소요비용의 **60%** 지원(단, 단위과제별 지원한도액 범위內 지원 가능)
- 지원규모 : 각 과제별 한도내 지원(여러과제 지원시 연간 20백만원 이내)
- 신청기간 : 2026년 8월 21일(금) ~ 9월 11일(금) / 3주간
- 결과발표 : 2026년 9월 22일(화), 예정(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)
- 신청방법 : 경기기업비서(www.egbiz.or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
□ 지원대상

- 지원자격 : 동부거점센터 소관* 사업비 출연 시·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 완납 **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** 영위 중소기업 ☞ 첨부 지원가능업종 참조 * 경기도에 본사와 공장 둘 다 소재시 본사 소재지 우선

<동부권 사업비 출연 시군> : 광주, 하남, 이천, 여주, 양평

<지식기반서비스업> :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(별표1)

○ 우대사항

- －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창업보육센터(중소벤처기업부 및 시/군 지정) 또는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, 경기도가 운영하는 창업혁신공간(8개소)입주기업 우대

· 창업혁신공간(8개소) : 남서부(안양), 동부(하남), 북동부(구리), 북서부(고양), 서부(부천), 남부(수원), 남동부(성남), 북부(의정부)

○ 신청 및 지원 제외

- － 공고일 기준, 신청기업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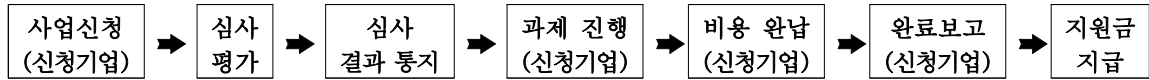
- ① 본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(별표2)
- ② 민원야기, 환경오염,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
-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, ④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
- ⑤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, ⑥ 휴·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⑦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- ⑧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
- 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he사업 지원과제 참여 중 부당지원 수혜자로 최종 제재 결정된 기업

□ 지원절차

○ 지원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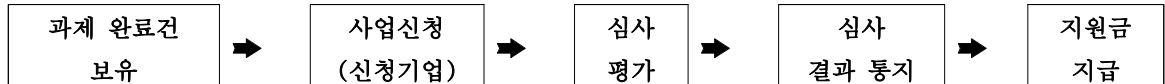
- － **[사전신청분야]** 홈페이지, 제품패키지, 홍보판로(홍보동영상, 전문잡지), 카탈로그, 시제품제작(금형, 목업)

향후 진행할 과제를 신청



- － **[사후신청분야]** 국내외특허(실용신안)/상표/디자인 출원, 규격인증, 시험분석, 국내외전시회

공고일 이전에 완료한 과제를 신청



□ 세부 과제별 지원내용 (과제별 소요비용의 60%, 연간 3회 및 20백만원 한도 복수신청 가능)

구분	단위 지원사업	세부내용		최대 지원한도 (단위 : 만원) (지원비율)	자부담	총소요 비용	광주	하남	이천	양평	여주
창안개발	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(사후)	• 상표, 디자인 출원 시 관납료, 대행기관 수수료 등 ※상표출원 : 국내·해외 / 디자인출원 : 국내		국내상표 200	133	333	○	○	○	○	○
				해외상표 500	333	833					
				디자인 280 (60%)	186	466					
		• 국내특허, 실용신안 출원 시 관납료, 선행기술조사비, 우선심사료, 대행기관 수수료 등		국내특허 520	346	866	○	○	○	○	○
				실용신안 360 (60%)	240	600					
		• 해외특허 및 해외PCT 출원 시 관납료, 대행기관 수수료 등		해외특허 500 (60%)	333	833	○	○	○	○	○
	(사후)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	• (국내)KS,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, 기술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• (해외)UL, FCC 등 해외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		국내 300	200	500	○	○	○	○	○
				해외 700 (60%)	466	1,166					
	산업기술 정보제공	•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 아이템과 관련한 산업기술정보자료를 조사 후 기업체에 제공		200 (100%)	0	200	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접수				
제품생산	시제품제작 지원	• 금형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 ※ 금형분야 선정될 시 중간점검 진행		금형 1,500	1,000	2,500	×	×	×	×	×
				목업 500 (60%)	333	833	○	×	○	×	×
	(사후) 시험분석 지원	•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·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비 지원		200 (60%)	133	333	○	○	○	○	○
판로개척	홈페이지 제작 지원	• 한글/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		220 (60%)	147	367	○	○	○	×	×
	(사후)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	• 국내외 개최되는 전시·박람회 참가비용 지원		국내 300	200	500	○	○	○	○	×
				해외 500 (60%)	333	833					
	제품 패키지 개선 지원	• 기업 판로 확대 및 제품홍보 위한 제품의 박스, 포장지 등 디자인·제작비용 지원		330 (60%)	220	550	○	○	○	×	×
	국내 홍보판로 지원	전문잡지	• 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지원	300 (60%)	200	500	○	○	○	×	×
		홍보 동영상	• 기업 및 제품 홍보 영상물 제작비 지원(일반영상 또는 3D영상 제작)	일반 300	200	500	○	○	○	×	×
				3D 400 (60%)	266	666					
	카탈로그	• 국문 또는 수출 및 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해 외국어로 제작하는 제품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	220 (60%)	147	367	○	○	○	○	×	

□ 기 타

○ 유의사항

- 필수서류 미비 시 보완이 요청될 수 있으며, 기한내 보완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지원 배제
- 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, 각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-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
- **결산 등의 이유로 직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**,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(국세청) 함께 제출
- 재무제표 작성·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(국세청) 제출
-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/지원이 불가하므로, 체납여부 사전 확인 필요
-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여부, 휴·폐업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(국세청 발급) 제출
 - ※ 사업자등록증 불인정
- 공장등록유무 확인을 위한 공장등록증명서(민원24 발급) 제출
 - ※ 공장등록증 불인정
- **가점 항목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'24년도 12월 귀속분과 '25년도 12월 귀속분 제출**

○ 지원결정의 취소

- 사업 공고일 이전 이미 시행이 완료된 경우(사전신청 분야만 해당)
-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
- 사업완료 시점까지 과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보완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* **모든 신청 과제는 10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함**
- 비용지출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, 비용 증빙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
-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
- **과업완료 이전에 사업비 출연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**
-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, 제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
-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신청기업에 부도,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- ☞ **선정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향후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**

○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

- 신청기업이 총 소요비용 전액(부가세 포함)을 선 지출한 건에 대하여 지원금 신청서 제출,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신청기업 지정계좌로 지원금 지급
-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
- (법인)카드 사용 시 (법인)카드 사본, 카드사용 영수증,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를 제출
- 부가세 및 관세 등의 사후 환급금,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의 부담으로 함
- 지원금 지급 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지급

□ 문 의 처

거점센터	관할 시군	담당자
동부거점센터	광주시, 여주시, 양평군	천정희 과장 031-830-8566
	하남시, 이천시	정지호 대리 031-830-8568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